

연명의료 결정제도

임실노인복지센터

1.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목적

-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 주요 용어

용어	설명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연명의료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 참고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https://lst.go.kr>)

2. 연명의료결정제도 포스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 1 등록기관 방문**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 2 본인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 3 상담 및 작성**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4 등록 및 효력 발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 2. 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전화 1855-0075)